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19호

2021.9.21.(화)



서울특별시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조 례]

제8126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2
--	---

자치법규**[조 례]****◆ 서울특별시조례 제8126호****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
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1년 9월 21일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7절(제44조의2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

제44조의2(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)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"시·도조례로
정하는 비율"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"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
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「서울
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"시·도조례
로 정하는 비율"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개정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법률 제18314호, 2021. 7. 20. 일부개정, 2021. 9. 21. 시행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라 사·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하고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설함(제7절 신설).
-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함(제44조의2 신설).
- 구청장에게 관리계획 수립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제45조제3항 신설).
-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라 사·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함(제50조의2 신설)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